

地方債(借入金)發行 同意 案

의안번호	47
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6. 11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
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
규정하고 있음.
-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서부산문화회관 신축비 일부에 대하여 지방채를
발행하고자 함.

2. 主要内容

- 대상사업 : 서부산문화회관 건립
- 발행금액 : 1,250백만원
- 차 입 선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청사정비기금)
- 발행조건 : 연리3%,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
- 차입시기 : '97. 3.

'97年度 地方債發行 同意 案

1. 根 據 : 地方自治法 第115條 및 同法 施行令 第45條

2. 發行必要性

-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
- 지방채발행 적채사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제공(연3%)

3. 發行計劃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발행금액	차 입 선	발행조건	차입시기	상환재원
서부산문화 회관	1,250	지방재정공제회 (청사정비기금)	년리3%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	'97. 3	지방비(구비)

4. 事業計劃

- 사업목적 : 을숙도 상단부에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생활편의시설 및 여가선용 공간제공
- 사업개요
 - 기 간 : '95. 12 ~ '98. 8
 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-14
 - 내 역
 - 부 지 : 10,000평
 - 연 건 평 : 2,515.3평(지하1층, 지상2층)
 - 주요시설 : 중강당(797석), 전시실(138평), 회의실, 취미교실, 휴게실, 기타